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68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5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제출
- (2) 제 안 일 : 2025. 10. 23.
- (3) 회 부 일 : 2025. 10.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위촉 인원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며(안 제7조제4항) (2)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이 전문은행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1항제4호) (3)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u>질병관리청차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위원장이</u> 임명·위촉한다. 1. (생략) 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질병관리청장</u> ----- ----- <u>질병관리청장이</u> ----- ----- ----- <u>질병관리청장이</u> -----. 1. (현행과 같음) 2. ----- -----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
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질병관
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2조(기탁) ①·② (생 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
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

----- 전문가를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

-----.
----- 제1호 및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의 취소
를 요청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탁)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질병관리청장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u>방법 및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수수료) <u>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	-----. ④ ----- ----- ----- <u>방법 및 절차</u>,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제14조의2(수수료) <u>질병관리청장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제공-----</u> ----- ----- ----- ---- <u>받을 수 있다.</u>
--	--

2. 주요 검토사항

가. 병원체자원 개요

- 병원체자원은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와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로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을 말함(법 제2조).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2.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 감염병의 원인체인 병원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생물을 위험군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위험도에 따른 미생물 위험군 분류(WHO)>

분 류	정 의
제1위험군	(개인과 지역사회에 위해가 없거나 낮은 경우) 건강한 성인 또는 동물에 거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
제2위험군	(개인의 경우 중등 위해, 지역사회의 경우 낮은 위해) 성인 또는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서 실험종사자, 지역사회 및 환경 등에 질병발생이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분 류	정 의
제3위험군	(개인의 경우 높은 위해, 지역사회 경우 낮은 위해) 일반적으로 성인 또는 동물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간 감염이 될 수 있으며,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제4위험군	(개인과 지역사회에 높은 위해) 일반적으로 성인 또는 동물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 간 감염이 될 수 있으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 우리나라는 WHO의 기준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¹⁾에서 위험군별로 미생물을 분류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해 관리실험실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6조).

<위험도에 따른 병원체 위험군 분류(복지부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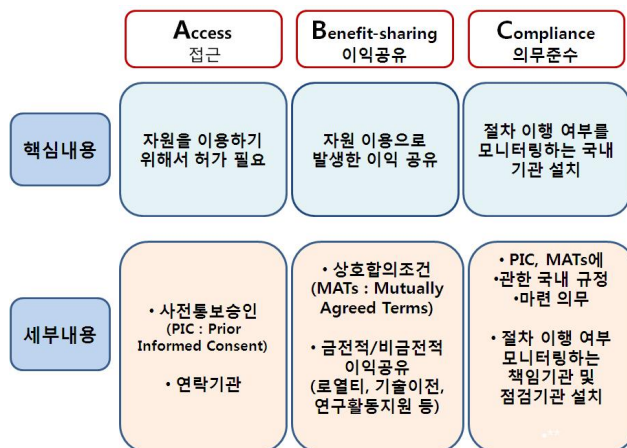
구 분	정 의	관리실험실
제 1 위험군 (Risk Group 1, RG1)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체	BSL1 (Bio-Safety Level)
제 2 위험군 (Risk Group 2, RG2)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BSL2
제 3 위험군 (Risk Group 3, RG3)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BSL3
제 4 위험군 (Risk Group 4, RG4)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BSL4

- 이와 같이 유전자원 중 하나인 병원체는 과거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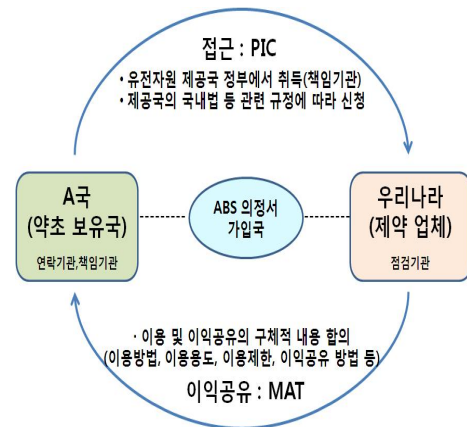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52호

□ 또한, 생물다양성협약(1993)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이후, 나고야의정서(2014. 10. 12. 발효)는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고 승인에 따라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병원체자원의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의정서 핵심 내용>



<이익공유 절차 흐름도>



□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제2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수립중, 2026~2030)하고 있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음.

나.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추천 2명 이상)임.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개요 >

□ 법적근거

- 병원체자원법 제7조, 병원체자원법 시행령 제4조

□ 설립목적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사·결정

□ 주요임무

-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법적 성격

- 질병관리청 소속 행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14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간
- 회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현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는 제4기('25. 4. 17.~'27. 4. 16.)로서, 정부위원 4명(위원장 1명 포함), 전문가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4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

(임기: '25.4.17. ~ '27.4.16.)

연번	성명	소속(직위)	기타
1	임○영	질병관리청(차장)	위원장
2	윤○숙 (직무대리)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국장)	정부 위원
3	김○정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국장)	
4	김○근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센터장)	
5	김○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수)	
6	김○경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과기부 추천>	전문가
7	김○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8	박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9	이○민	국제백신연구소 (과장)	
10	이○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11	이○재	KAIST의과학대학원(연구원)	
12	이○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책임연구원) <과기부 추천>	
13	이○용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수)	
14	정○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교수)	
15	한○현	서울대학교 치의과학과(교수)	

* 자료: 질병관리청

- 개정안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인 질병관리청장²⁾을 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의 주체와 책임 주체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전

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수집·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가 참여를 통한 심의의 전문성과 특정 부처 위원 과다 편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위원 1명, 추천 전문가위원 2명) 완화를 통한 유연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인 법정 위원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있음.

< 질병관리청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

구분	위원회명	법적 근거	위원 구성	위원 구성 방식	주요 업무	구성 일시
1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예방법 제9조	위원장 (질병관리청장) 포함 29명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의료인, 감염병 전문가, 민간단체 추천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주요 정책 심의 등	2011. 2.16.
2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손상 예방법 제7조	위원장 (질병관리청장) 포함 15명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문가 등)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 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등 심의	2025. 2.14.
3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병원체 자원법 제7조	위원장 (질병관리청차장) 포함 15명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과기부장관 추천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인이상 포함))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2018. 7.2.

* 자료: 질병관리청

□ 개정안 제7조제4항은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항에서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있음.

후자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사항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³⁾

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 사유 추가

- 개정안에서는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사유에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제4호).

< 현행 전문은행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

지정 취소 (법 제10조제1항 단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법 제9조4)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 ②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분석·평가
 2.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3. 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5. 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전문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025년 10월 현재 분야별 병원체자원 수집·수탁 및 분석·평가, 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타 병원체자원은행과 협력 등을 위하여 바이러스 분야 등 총 12개 전문은행이 지정되어 있으며, 2개 전문은행이 지정취소된 바 있음.

참고로, 지정취소된 사례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항생제내성균주 분야 전문은행(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전문은행장의 사임으로 인해 전문은행 운영을 총괄·책임질 핵심 전담 인력 부재로 「병원체자원법」 제10조⁵⁾제1항제2호 전문은행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전문은행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고, 다제내성균분야 전문은행(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 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전문은행으로 지정한 바 부서간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지정을 취소한 바 있음.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국고보조지원 현황(2025년) >

분야	기관명	지정일자	국고보조지원
바이러스	고려대산학협력단	2017. 6.26.	1.2억
의진균	가톨릭관동대 의료기술협력단	2017. 8. 3.	2.2억
바이러스	서울아산병원	2018. 5. 4.	0.9억

5)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분야	기관명	지정일자	국고보조지원
인수공통감염원인균	전북대 산학협력단	2019. 7. 9.	1억
구강세균	조선대 산학협력단	2021.11. 3.	0.7억
식중독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0. 5.27.	국고보조없음
난배양병원체	경상국립대병원	2021. 8.11.	
호흡기질환병원체	경북대병원	2021. 8.11.	
혈액분리병원체	전북대병원	2023. 3.17.	
신·변종병원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023.12. 4.	
의료관련감염내성균	한림대성심병원	2024. 1.15.	
결핵균	(재)국제결핵연구소	2025. 3. 6.	
항생제내성균주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2020.03.04.	지정취소 (2024.01.16.)
다제내성균	국립보건연구원	2020.04.07.	지정취소 (2024.01.16.)

* 자료: 질병관리청

□ 개정안은 ‘해당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질병관리청장은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은행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사정으로 전문은행이 요청하면 바로 취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⁶⁾, 탄력적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지정 취소된 경우 해당 전문은행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병원체자원의 이관 등 사무관리를 면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7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 소요경비 중 일부를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병원체자원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주체에 현 질병관리청장 외에 전문은행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4조제2항 단서7))에서 전문은행이 보관·관리하는 병원체자원의 분양수수료는 전문은행에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과 고시가 불일치하고 있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6월 기준 병원체자원 보유 및 등재 현황을 보면, 수집·기탁을 통한 34,850주/건의 보유자원 중 분석·평가를 거쳐 가치있는 자원으로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등재자원은 세균 6,928주, 진균 807주, 바이러스 538주 등 8,647주/건임.

< 병원체자원 보유 및 등재 현황 >

(2025. 6월 기준, 단위: 주/건)

항목	합계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파생물질
보유자원	34,850	29,560주	4,026주	841주	1주	422건
등재자원	8,647*	6,928주	807주	538주	1주	373건

* 수집·기탁을 통한 보유자원 중 분석·평가를 거쳐 가치있는 자원만 보존·관리목록에 등재, 보유 자원 대상의 분석·평가 지속 수행

** 자료: 질병관리청

- 7)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분양 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보존·관리에 소요된 경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 1의 병원체자원 분양 수수료를 준용하나,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은행에서 보관 관리하는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은행에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④ (생략)

□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병원체자원 분양 및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세균 8,484주, 진균 359주, 바이러스 3,834주 등 18,260주/건을 분양하였고, 그에 따른 분양 수수료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약 7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음.

< 최근 5년(2020~2024년) 병원체자원 분양 및 수수료 징수 현황 >

(단위: 주/건, 천원)

연도	합계	세균	진균	바이러스	파생물질	징수 수수료
2020년	3,047	1,069주	58주	557주	1,363건	145,902
2021년	3,988	1,597주	53주	917주	1,421건	179,176
2022년	4,925	2,080주	109주	1,038주	1,698건	209,049
2023년	3,352	1,835주	70주	726주	721건	130,127
2024년	2,948	1,903주	69주	596주	380건	97,530
계	18,260	8,484주	359주	3,834주	5,583건	761,784

* 자료: 질병관리청

문 의 처

02) 6788-5501